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6. 6. 18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6. 6. 18

라. 상정일자 : 제46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3차총무위원회(96. 6. 19)상정

마. 의결일자 : 제46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4차총무위원회(96. 6. 20)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○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신설, 폐지 등으로 조례개정

나. 주요골자

○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

기관별	현행	개정	증감	비 고
계	2,316	2,318	증2	
시 본 청	409	419	증10	시설과, 정보통신과 신설 등
의회사무국	26	27	증1	의회인력보강
직 속 기 관	122	123	증1	오정구보건소 고용직보강
사 업 소	279	385	증106	상수도사업소, 청소사업소 신설
구 청	868	718	감150	구 수도과, 청소과 폐지 및 방법원의 동배치
동	612	646	증34	구 방법원 동배치 (동별 1명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동조제안에 대해 각 안별로 축조심의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22호
의 결	96. 6. 28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18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○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신설, 폐지 등으로 조례 개정

주요골자

○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

기 관 별	현 행	개 정	증 감	비 고
계	2,316	2,318	증2	
시 본 청	409	419	증10	시설과, 정보통신과 신설 등
의회사무국	26	27	증1	의회인력보강
직 속 기 관	122	123	증1	오정구보건소 고용직 보강
사 업 소	279	385	증106	상수도사업소, 청소사업소 신설
구 청	868	718	감150	구 수도과, 청소과 폐지 및 방법원의 동 배치
동	612	646	증34	구 방법원 동배치(동별 1명)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부천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 본 청 : 419명
2. 의회사무국 : 27명
3. 직 속 기 관 : 123명
4. 사 업 소 : 385명
5. 구 청 : 718명
6. 동 : 646명

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